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9. 10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지구는 영종하늘도시 내 북측에 위치한 산업시설용지로 부지조성공사를 2015년 12월 완료하였으나,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업입주가 부진한 실정임.
 -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완료
 - 영종하늘도시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써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
 -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입주 부진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도 동반 저조하여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 또한, 사업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경제적 여건(물류비용 절감)이 매우 유리하고,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에 따른 항공·물류 관련 산업 입주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종하늘도시 내 효율적, 체계적인 산업육성 및 관리를 위해 제한없이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부지정지공사가 완료('15.12)된 영종하늘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항공부품·항공운송서비스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전략적인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경제 활동 촉진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산업단지 지정효과 : 수도권 규제 완화, 공장총량제 미적용, 국내기업 세제혜택 등
 - 수도권 규제 완화 :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가능(산업집적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
 - 공장총량제 미적용 : 공장총량제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국내기업 공장 신설 가능(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
- 한편, 영종하늘도시 내 산업시설을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본 사업은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총리주재, '16.8.31)」시 결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규제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함.
 - 회의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간 융합환경 조성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① 개요

○ 시언며 : 이취거제지은그여 여조지그 여조치느드시 게바시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경제청고시 제2019-46호, 2019.9)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사업지구 면적 : 507,70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1.3.1 사업 추진 경위

- 2003. 08. 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 고시
- 2006. 11. 27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환경평가과-2571)
- 2006. 12. 05 :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승인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 2015. 12. 31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준공(1,2단계)
 - ※ 사업지구 대상부지 조성공사 준공
- 2017. 08. ~ 11. : 산업단지 지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관련 환경부 협의
 - ※ 유치업종 미변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가능(국토환경평가과-2448, '17.11.13)
- 2017. 12. 25 : '18년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인천광역시 제2017-312호)
- 2018. 02. 27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신청(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중복지정)
- 2018. 11. 22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2호)
- 2019. 08. 09 ~ 08. 2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3.2 향후 계획

- 2019.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0.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1.4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다. 사업면적

- 507,709.2㎡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마. 승인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바.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사.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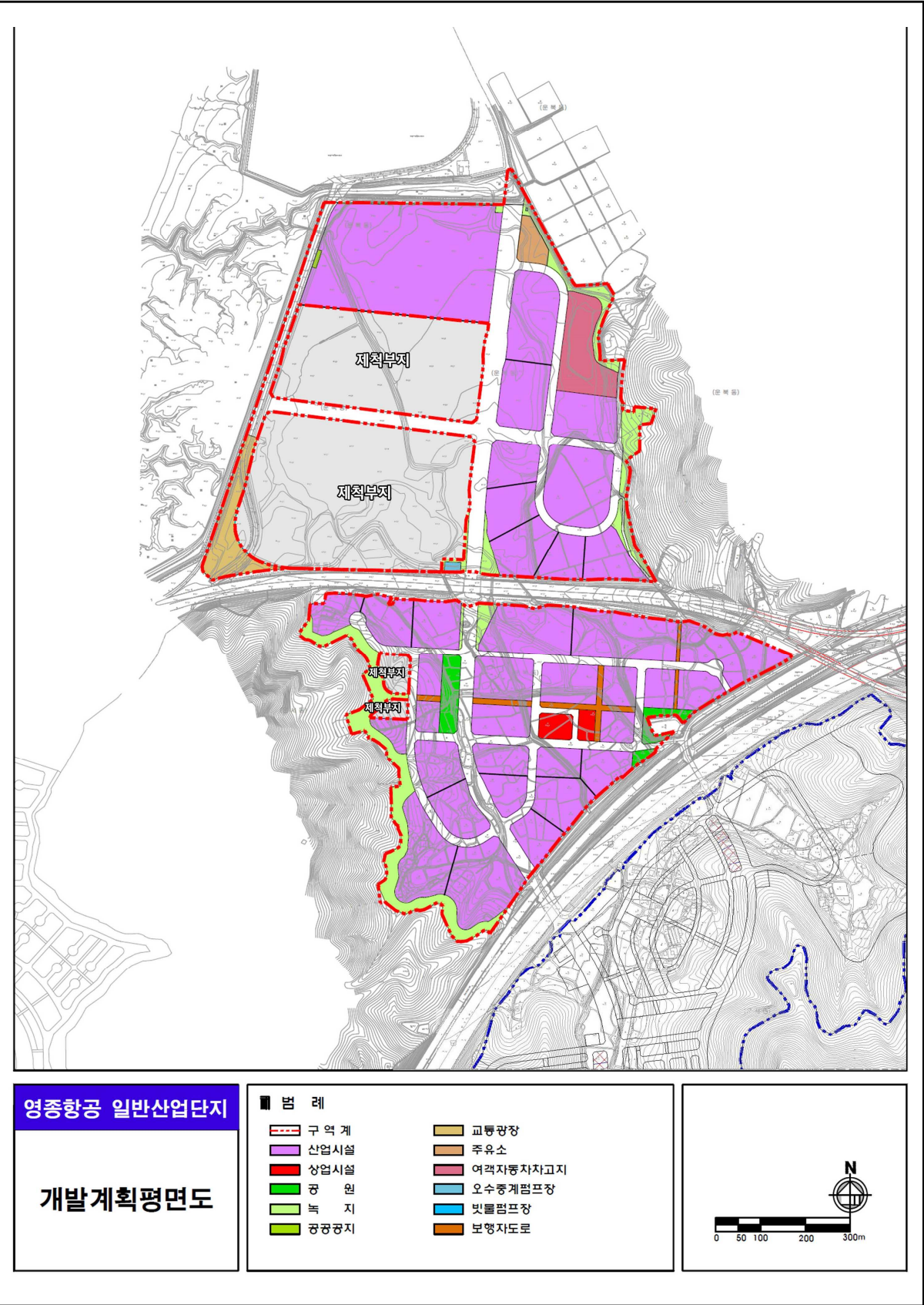
- 2003. 08. 11. ~ 2020. 12. 31.

아. 토지이용계획(안)

- 본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은 산업시설용지 323,827.3㎡(63.8%), 상업시설용지 4,319.0㎡(0.9%), 공공시설용지 176,137.9㎡(34.6%), 기타 시설용지 3,425.0㎡(0.7%)로 계획함.

<표 1.4-1>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507,709.2	100.0		
산업시설용지	323,827.3	63.8		
상업시설용지	4,319.0	0.9		
공공시설용지	176,137.9	34.6		
	교통광장	10,829.0	2.1	
	공원	7,673.2	1.5	
	녹지	36,933.2	7.3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2.5	
	오수중계펌프장	17.0	0.0	
	빗물펌프장	500.5	0.1	
	공공공지	237.0	0.0	
	보행자도로	5,366.0	1.1	
	도로	102,014.0	20.0	
기타시설용지	3,425.0	0.7		
주유소	3,425.0	0.7		



(그림 1.4-1) 토지이용계획도

자. 유치업종 배치계획(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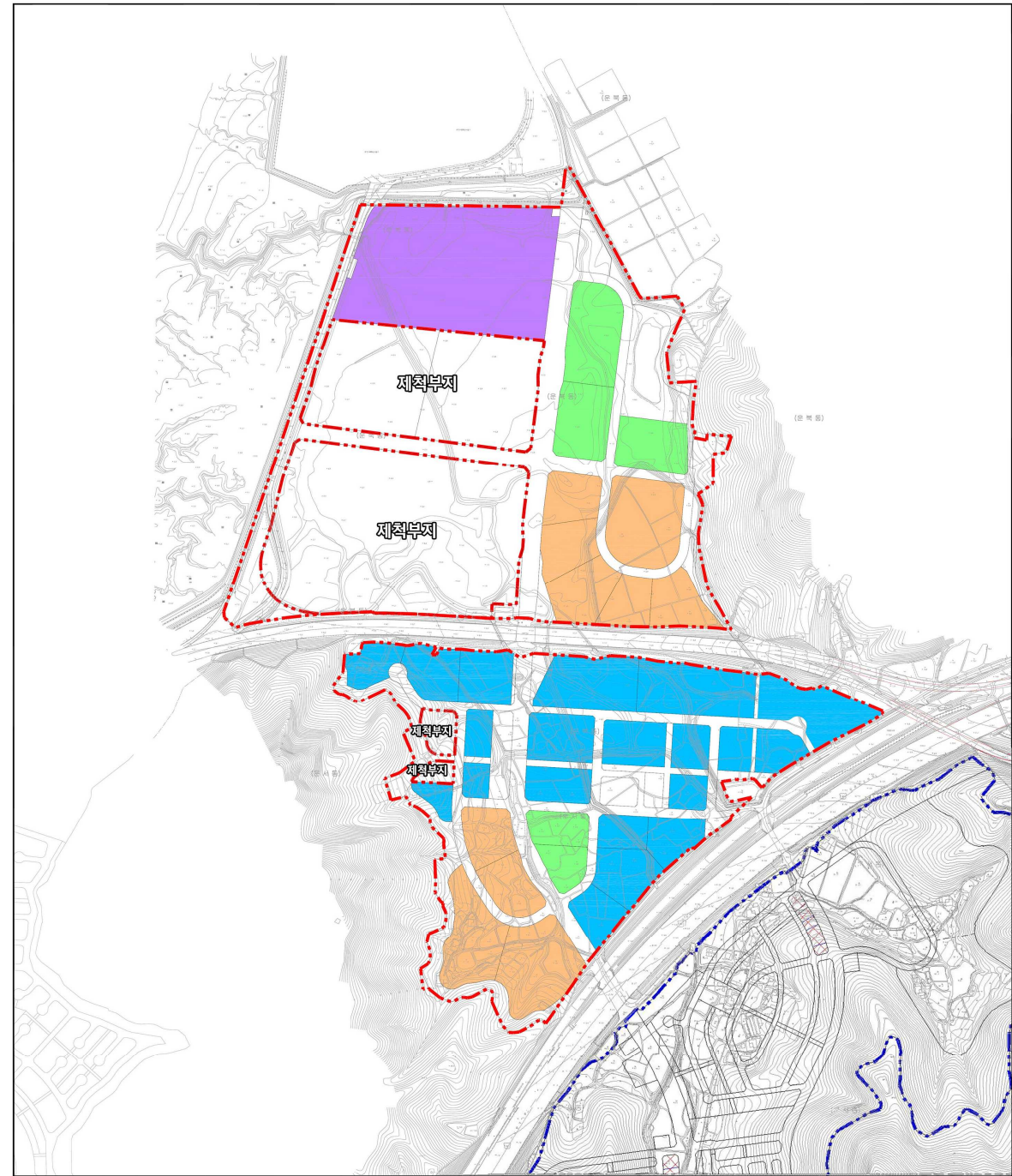
- 기 협의 완료된 영종하늘도시 환경영향평가('06.11.27)상 유치업종을 우선 고려하되 현 상황에서 지역특성, 상위계획 및 입주수요 등을 검토
-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첨단항공산업의 입주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원 및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 도출
- 영종지역 개발 기본계획,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인천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계획 수립 상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입시설을 근거로 사업지구의 지역여건을 감안

2) 업종별 배치계획

- 기 협의 완료된 영종하늘도시 환경영향평가('06.11.27)상 유치업종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항공관련 업종, 입주수요조사 결과, 상위 및 관련계획, 장래유망업종, 지역특화, 다른 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인천공항 주요 수출화물 등을 고려하여 항공관련 제조업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공항인접 특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항공운송 서비스업으로 선정하였음

<표 1.4-2> 유치업종 배치계획(안)

구분	유치업종		면적(㎡)	비율(%)
계			323,827.3	100.0
항공관련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126,264.3	39.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3,082.0	19.5
항공운송 서비스업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92,443.0	28.5
	H50	수상 운송업		
	H51	항공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2,038.0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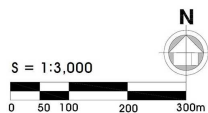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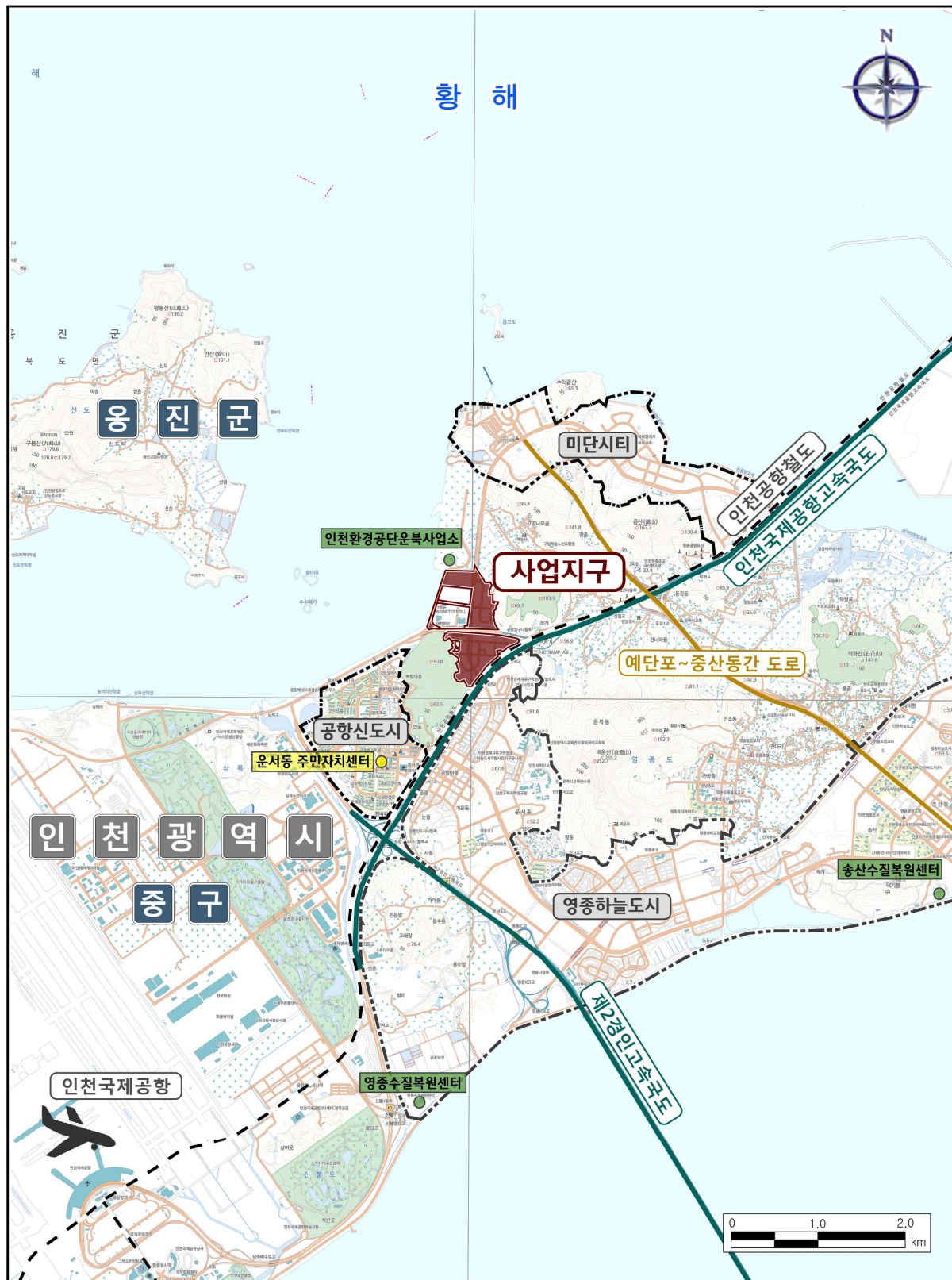
범례

구역계

구분	유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항공관련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항공운송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수상 운송업	H50
	항공운송업	H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그림 1.4-2) 업종배치계획도



(그림 1.4-3) 사업지구 위치도(상세)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1.4-4) 사업지구 위치도(광역)



(그림 1.4-5) 사업지구 위성 및 항공사진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그 세부내용은 「제5장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에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2018.12.1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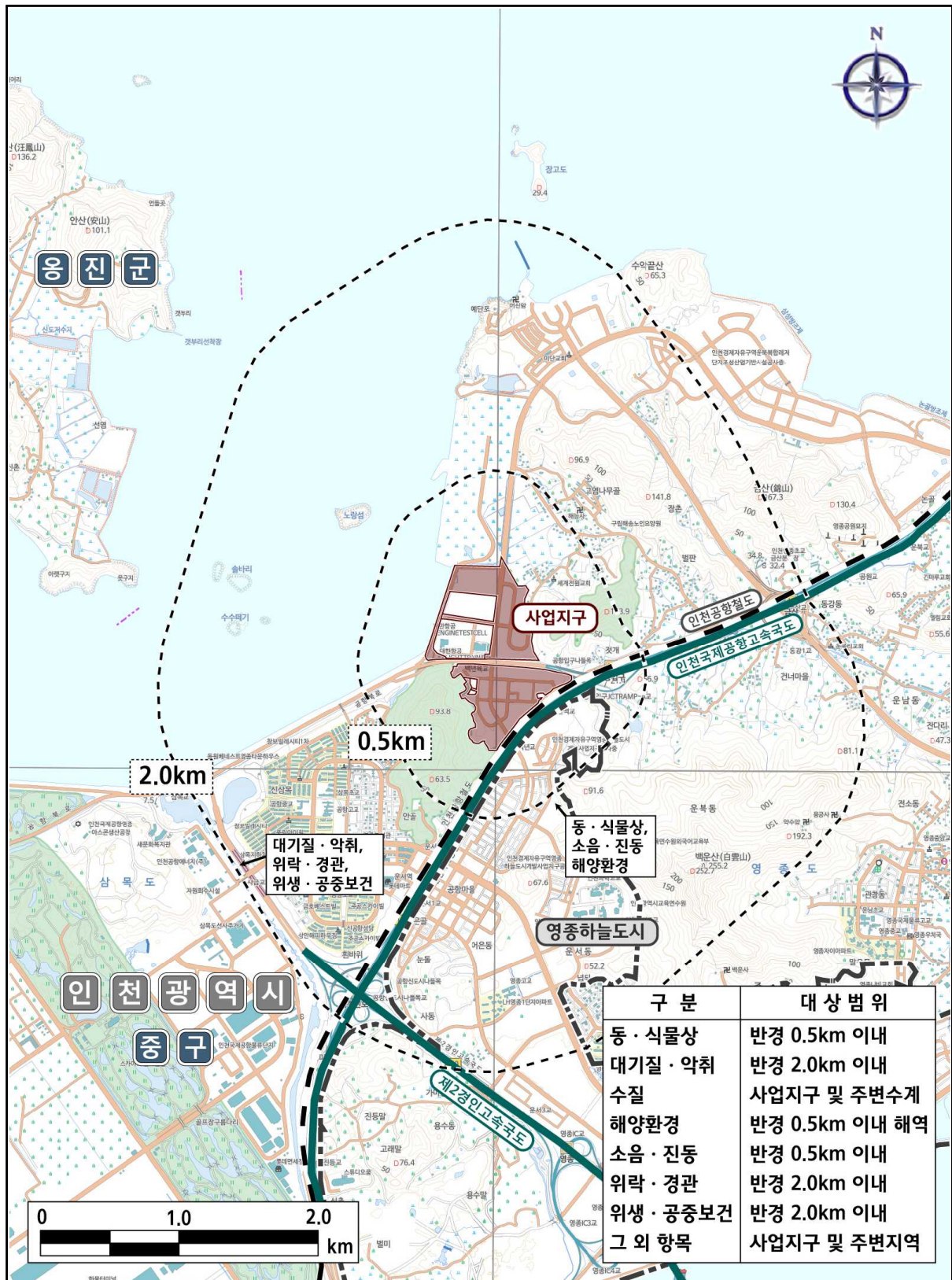
<표 2.1-1>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항목	검 토 사 항	평가범위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사업계획 내용, 현지조사, 탐문 및 문헌조사, 유사사례 조사 실시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0.5km
대기환경	기상	○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조사	○ 인천기상대
	대기질	○ 현지조사 및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질 영 향검토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악취	○ 현지조사 및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악취 영향검토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도출	○ 사업지구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 현장조사, 수계분석 실시 ○ 공사시 합리식을 이용하여 토사유출 검토 ○ 운영시 원단위 및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폐 수발생량 등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해양환경	○ 공사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운영시 오·폐수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 는 영향 검토	○ 사업지구 인근 해역 (경계로부터 0.5km)
토지환경	토지이용	○ 현지조사, 현재 토지이용현황 조사, 사업계획 내용 검토	○ 사업지구
	토양	○ 현지조사 및 공사시 폐유발생에 따른 저감방 안 검토	○ 사업지구
	지형·지질	○ 지형도, 지질도, 현장조사 ○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 사업지구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1-1>의 계속

구 분	대상항목	검 토 사 항	평가범위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문헌자료 원단위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수립	사업지구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소음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0.5km
	위락·경관	- 위락시설 현황 기존자료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위생·공중보건	- 기초자료조사 - 산업시설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 영향 및 저감 대책 검토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기초자료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산업	관련 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배치계획 및 산업 환경 변화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그림 2.1-1) 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의 설정은 상위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수용하고 자연적 여건에 부응한 합리적 토지이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보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였음.
- 토지자원의 생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배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경제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안별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평가하였음.
- 대안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2.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선 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2.1 계획비교

○ 계획 수립(Action)과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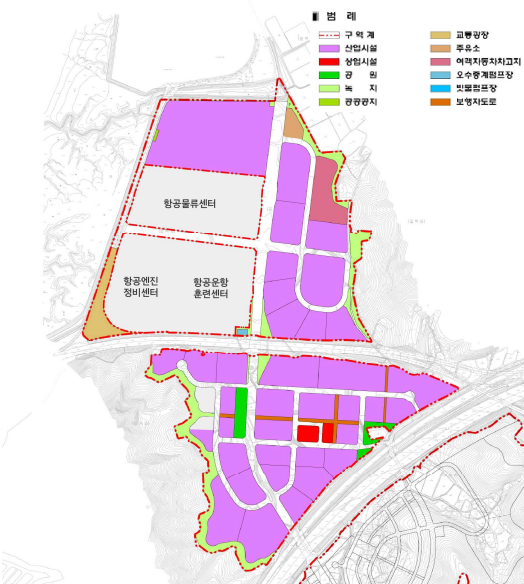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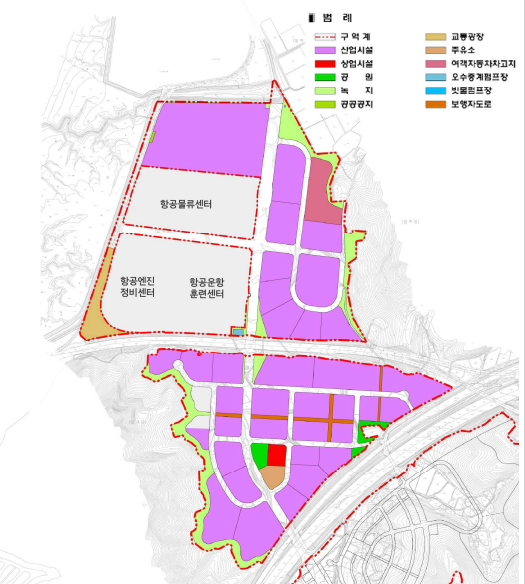
<표 2.2-2> 계획비교

구 분	계획 수립(Action)	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친환경적인 일반산업단지 개발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관련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현재의 현황을 유지함으로서 무분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 상의 변화 없음.
보호구역	○ 각종 환경관련 보호구역에 저촉하지 않음	○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사업지구 전체가 생태·자연도 2, 3등급 권역임(1등급 권역 없음). ○ 사업지구 경계부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 생태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영종하늘도시사업으로 포함되어 부지정지공사는 완료되어 생태계변화는 미미함.
지형의 훼손	○ 공사 시 부지정지로 인한 지형변화 거의 없음(기개발지). ○ 사업지구는 대부분 평탄지로 지형적조건의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재해	○ 사업지구 내 빗물펌프장 계획 등 자연재해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활환경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산업 기능 확보	○ 생활환경의 변화는 없음.
자연경관	○ 사업시행 시 건축물 입지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 되도록 사업을 시행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환경(대기 질, 수질, 소음 등)의 오염이 예상됨. ○ 오염원별 저감대책 강구·시행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주변 환경질의 변화가 없음.
선정사유	○ 본 사업은 국무총리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2016.08.31)시 결정된 “경제자유구역활성화 규제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임. ○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부품·항공운송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제 활동 촉진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을 시행(Action)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선정안	●	-

2.2.2 수단·방법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3> 토지이용계획 대안별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면적		507,709.2㎡	507,709.2㎡
특징			
토지 이용 계획	장점	○ 상업시설 및 공원과 보행자도로의 동선 체계와 연계하여 접근성 양호 ○ 위험물처리시설의 상업·공원과 이격배치 및 여객자동차차고지와 연계하여 교통동선 최소화	○ 공원 및 상업시설의 집중으로 활성화 및 이용편의성 향상 도모 ○ 주유소와 간선도로의 교통체계 연계 양호
	단점	○ 주유소의 주요간선도로 접근성 저하 ○ 공원과 상업시설간 간선도로로 분리되어 연계성 저하	○ 주유소, 공원, 상업시설 집중에 따른 보차 상충요소 증가 ○ 보행자도로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근체계 저하 ○ 여객자동차차고지와 주유소의 교통동선 비효율
선정사유		○ 상업시설-보행동선-공원의 연계성이 높으며, 대상지 간선도로와의 이격 및 위험요소 분리를 통해 상충점 최소화 등 효율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조성 가능	
선정안		●	-

2.2.3 수요·공급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4> 수요 · 공급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공 통 (입주수요 및 공급예정수요)	구분	수요면적		계획면적		계획면적 대비
	면적	473,968㎡		328,816㎡~323,827㎡		144%~146%
	주변현황 연계성	○ 인천국제공항과 인접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내 입지하고 있어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유리하고, 항공관련 산업수요 반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가능				
	주변 도로 연계성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동측), 제2경인고속도로(남측)와 인접 ○ 반경1km 내 공항 철도가 위치, 광역교통 접근성 우수				
유치업종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507,709.2	100.0	합계	507,709.2	100.0
	산업시설용지	323,827.3	63.8	산업시설용지	328,816.3	64.8
	C26	126,264.3	24.9	C26	140,858.3	27.7
	C29	63,082.0	12.4	C29	63,082.0	12.4
	H49	92,443.0	18.2	H49	92,443.0	18.2
	H50					
	H51					
	H52	42,038.0	8.3	H52	32,433.0	6.5
	상업시설용지	4,319.0	0.9	상업시설용지	3,119.8	0.6
	공공시설용지	176,137.9	34.6	공공시설용지	172,145.4	33.9
	기타시설용지	3,425.0	0.7	기타시설용지	3,627.7	0.7
	주 : 1.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주 : 1.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2.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H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H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 H50 : 수상 운송업			4. H50 : 수상 운송업			
5. H51 : 항공 운송업			5. H51 : 항공 운송업			
6.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선정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수요 조사결과 총 81개 업체 473,968㎡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면적이 323,827㎡~328,816㎡으로 계획면적 대비 144%~146%임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정온시설, 업종별 입주수요 면적, 도로의 효율적인 접근체계를 고려하여 1안으로 선정					
선정안	●		-			

2.3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 설정은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표 2.3-1>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분야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사유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중점평가항목	○ 사업시행 전·후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예측
	자연환경자산	일반평가항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예측
대기환경	기 상	일반평가항목	○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평가항목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량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 운영시 산업시설의 연료사용 및 공정배출에 따른 대기질 영향 검토
	악 취	중점평가항목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의한 악취 영향 예측
	온실가스	중점평가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 질	중점평가항목	○ 공사시 토사유출 검토 ○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 수계영향 검토 및 오·폐수처리계획 검토
	해양환경	일반평가항목	○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토지환경	토지이용	일반평가항목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토 양	일반평가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등에 의한 폐유 발생 ○ 운영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
	지형·지질	일반평가항목	○ 공사시 지형변화 및 토공량 검토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평가항목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소음·진동	일반평가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영향 검토 ○ 운영시 공장소음에 의한 주변지역 소음영향 검토
	위락·경관	일반평가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예측
	위생·공중보건	중점평가항목	○ 사업시행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분석
	전파장애	제외항목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없음
	일조장애	제외항목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없음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일반평가항목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산 업	일반평가항목	○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산업현황 파악

<표 2.3-2> 중점, 일반, 제외항목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제외항목
계		7항목	10항목	2항목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자연 환경자산	-	○	-
대기 환경	기 상	-	○	-
	대기질	○	-	-
	악 취	○	-	-
	온실가스	○	-	-
수 환경	수질	○	-	-
	해양환경	-	○	-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토 양	-	○	-
	지형·지질	-	○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소음·진동	-	○	-
	위락·경관	-	○	-
	위생·공중보건	○	-	-
	전파장애	-	-	○
	일조장애	-	-	○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	○	-
	산 업	-	○	-

2.4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예측방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3-1>과 같음.

○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지조사를 보완할 계획임.

○ 영향예측은 본 사업특성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적정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겠으며,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4-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및 예측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내용 및 기법
자연 생태 환경	육상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0.5k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 자 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0.5k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파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대기 환경	기상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상청(인천기상대) ③ 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과거 10년 자료)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 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 일반대기오염물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 유해대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NH ₃ , H ₂ S, Ni, Cr ⁺⁶ , 염화비닐, Cd, As, Hg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중심으로부터 2k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측정지점 : 6지점×2회(3일 연속)	○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 검토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연료 사용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 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2.4-1>의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내용 및 기법
대기 환경	악취	① 조사내용 ▶ 인근 악취 유발원 현황 ▶ 복합악취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측정지점 : 6지점×2회	○ 운영시 시설 가동에 따라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악취 영향 검토 ▶ AERMOD확산모델 이용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환경	수질	①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 지표수질 : pH, 수온, 유량, BOD, COD, DO, SS, 총대장균군, TOC,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Pb, As, Hg, Cr, NH ₃ -N, NO ₂ -N, Cd, 페놀, 경도, KMnO ₄ 소비량, 냄새, 맛, Cu, 색도, pH, Zn, Cl ⁻ , 중발잔류물, Fe, Mn, 탁도, SO ₄ ⁻² , Al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측정지점 : 2지점×2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운영시 오·폐수 처리계획에 따라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해양환경	① 조사내용 ▶ 해양수질 및 저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인근 해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사업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예측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표 2.4-1>의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내용 및 기법
토지 환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 본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지구내 토양오염도 현황 ▶ Cd, Cu, Pb, As, Hg,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조사지점 : 3지점×2회	○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시 토양오염물질 배출 여부 파악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특이지형 분포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사면 발생, 사면안정성 등 ▶ 설계자료 및 본 사업관련 지반 조사 보고서 등 참조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원단위법 이용 ▶ 본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소 음 · 진 동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현황 ▶ 소음·진동 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부터 0.5k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측정지점 : 5지점×2회 ·소음도 : 주간4회, 야간2회 ·진동도 : 주간2회, 야간1회	○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 시설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표 2.4-1>의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내용 및 기법
생활 환경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위생·공중보건	① 조사내용 ▶ 건강관련 현황자료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주민 등 에게 미치는 건강영향 예측 ▶ AERMOD확산모델 결과 활용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 화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검토- 문헌자료 및 본 사업관련 설계보 고서 참조
	산업	① 조사내용 ▶ 산업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 활동 변 화 검토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

3.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경위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일정

- 2019. 08. 09. ~ 2019. 08. 2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내용

- 심의안건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심의방법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 심의내용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 평가 항목·범위·방법 및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의 방법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및 건강영향평가 검토 등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기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승인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평가협의회 운영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3.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를 포함하였음.

<표 3-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영종청라개발과장	윤OO	위원장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김OO	협의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주무관	강OO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	윤OO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전OO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최OO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권OO	민간전문가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OO	시민단체
	운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OO	주민대표
	한국연안협회	연구원	정OO	민간전문가

3.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내 북측에 위치한 산업시설용지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항공부품·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도록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 본 심의의견은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변경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영향예측과 저감 및 보전방안을 비교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함.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생활환경, 대기환경,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등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음, 대기, 진동, 수질,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개발계획 포함)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경우 사업지구 및 주변의 동식물의 분포를 조사하여 동물들의 생활습성을 감안한 평가대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산업단지 운영시 공항과 산업단지간 차량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 등에 대해서는 영향범위를 확대해야 함.

- 대기질, 위생·공중보건(건강영향평가), 소음·진동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업단지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은 2.0km임.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중,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환경 대상범위를 인근해역으로만 설정하여 평가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최소거리를 0.5Km 이상 되도록 설정 검토 필요
- 계획지구 반경 2km를 영향예상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지구 남서측 및 남측으로 대단위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는바, 해당 지역들을 건강영향평가 주요 예측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적정지역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 추가적인 부분은 환경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주거지, 축사 등 정온시설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참조하여 현재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계획생태면적률(20% 이상)을 설정하여 비교·제시하여야 함.
- 대안의 평가 및 비교의 구성에서 검토항목이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영향예측과 저감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변경계획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대상물질별 저감시설, 임계가중배출량 산정·관리 또는 입주제한, 산업용지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환경부, 2017.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등 참조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인근에 다수의 정온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기(악취 포함), 위생·공중보건, 소음·진동 등 누적환경영향 평가를 하여야 함.
 - 계획지구 인근의 주거시설(조성 예정 포함), 취락시설(학교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수행
 -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으로 소음피해 예상 및 방지대책 마련
- 사업대상지 인근 해역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수립
- 악취로 인한 영향은 산업단지 이외에 주변 악취 발생시설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예견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유치업종 및 생산공정에서 발생될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저감방안(생산공정관리 및 방지설비 등)을 구체화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영향유무를 제시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악취물질 발생이 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공항부지 조성시 복토를 통해 토양이 불소로 오염된 바 있음. 이번 산업단지가 공항과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야겠지만,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대기질에 대해서만 대상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산업단지 운영 특성상 화학물질 사용이 예상되므로 화학물질 사고 대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야 함.
- (동·식물상)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사 시기, 조사 횟수, 지점·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특히,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중점 제시
-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및 주변 정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입주예정 업종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모두 선정하여 현황측정 및 평가 실시
 - 대기질 현지조사는 계절별로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설정

-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등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설정
-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누적평가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배출업종 제한 등의 저감방안 제시
- (건강영향평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항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수환경) 계획지역 수계현황(이용 현황, 수질 상태, 유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대상범위(직·간접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50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폐기물발생량 연간 2만톤 이상 설치 또는 증설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제외)
- (경관) 시설 배치 및 층수 계획이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을 분석·제시하여야 함.
- 해양환경 항목에서 조사범위를 0.5K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예측내용 및 기법의 내용에서는 산업단지 운영 시 우수처리 및 오·폐수 처리 계획에 따라 인근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으로 보완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조사 방법에 따라 충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조성으로 배출 예상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과 이에 기반한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함.
- 영향예상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수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주거용지 조성으로 추가 거주예정인수를 파악하여 영향평가에 활용
- ※ KEI. 2017.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등 참조)

- 주변 기존 오염원 및 계획지구 내 신규 조성되는 오염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계절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는 현황조사 필요
-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련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시 최근 3년의 업종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활용(※ 환경부, 2017.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등 참조)
-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항목, 범위, 방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요청 바람.
- 산업단지 운영시 차량통행량 증가, 화학물질 사용 등을 고려한 대상지역, 평가항목을 설정해야 함. 또한 토양오염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해양과 연접한 사업이므로 해양 동식물을 포함한 해양항목의 조사, 영향예측 및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이 필요함.
- 일반환경현황에 해양환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 필요(갯벌, 해수수질(WQI) 등)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산업단지는 환경오염 유발시설로 인식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이행단계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설명 및 성실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함.
-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및 해당 시설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내용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의견 수렴 시 공청회, 설명회, 주민공람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및 홍보 등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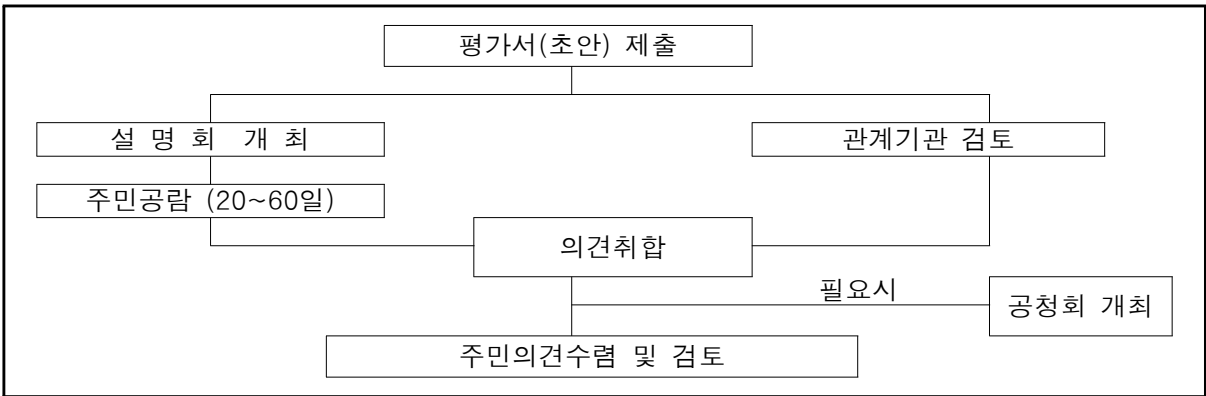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 동 심의의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8조 및 39조”에 의거 평가서(초안) 제출 후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임.

<표 4-1> 본 사업관련 주민의견수렴 계획

구 분	의견수렴계획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14일 이상) -해당 시·군·구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공람공고	○ 신문공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후 10일 이내 실시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지역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정보통신망 공고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평가서 초안 공람	○ 평가서(초안) 접수 후 10일 이내 평가서 공람실시(20~60일,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주관 시·군·구 관할구역 및 관계 시·군·구 관할구역에 평가서 초안 비치
주민설명회	○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초안 공람공고시 포함하여 공고 가능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서 개최
공청회	○ 공청회 개최(법적조건 충족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 해당 시·군·구 또는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14일이상 게시



(그림 4-1)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 절차